



‘제17차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회의’ 개최

지식경제부는 2월 22~24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제17차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CG)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전자무역 분야 등의 협력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존 한-대만간 전자원산지증명서 선도사업(Pathfinder Project) 외에 e-Nego*(전자적 수출환어음매입) 시스템의 국제 연계를 신규 선도사업으로 제안하는 등 APEC역내 전자무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 e-Nego 시스템의 국제 연계 : 국내 수출업자는 uTradeHub(우리나라 전자무역시스템) 접속만으로도 수출환어음매입(Nego)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발행신청하여 국내 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국내 은행은 동 서류를 SWIFT(전 세계 은행망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외 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

** Nego란? : 수출업자가 선적 등 물품수출사실을 증빙하는 제반서류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수출 대금회수를 신청하는 절차

APEC과 UN의 지원을 받아 「APEC-UN 전자무역 역량 강화 공동 심포지엄」*을 금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전자거래 주도국의 위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동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07년에 제안하여 APEC 무역투자자유화펀드(TILF)의 지원(약 6만 불)을 받아 '08.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

전자거래 활성화의 선결조건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국경간 개인정보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개도국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APEC 공식 사업으로 추진 중인 ‘APEC 여성의 디지털경제 참여 이니셔티브’ 사업의 성과를 발표하는 등 국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CG)의 신입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며,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임상원 표준개발팀장이 ECSCG 부의장직에 도전할 예정이어서 회의 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간 주로 다루어졌던 전자무역, 개인정보보호 외에 ‘IT를 활용한 혁신’, ‘전자문서’,

‘온라인 소비자보호’ 등 보다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의 장 확대를 제안할 예정이다.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회의는 '98년 APEC 전자상거래 행동계획이 채택된 이후 매년 두 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산하에 두 개의 소그룹(①전자무역 소그룹, ②개인정보보호 소그룹)을 두고 있다.

〈참고 1 : 제17차 APEC 전자상거래운영그룹(ECSG) 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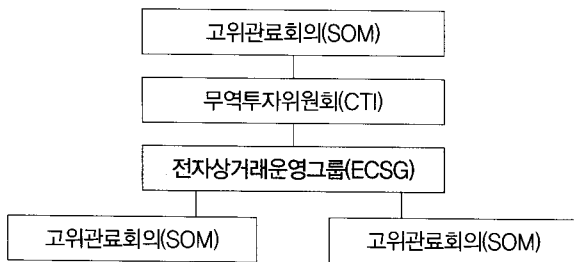
■ 회의 목적

- 법·제도 및 환경 조성을 통하여 APEC 역내 전자상거래 촉진
- 무역·투자 진흥을 위한 APEC의 전자상거래 활동 총괄 조정

■ 주요 논의 주제

- 국경간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 추진 방안
-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ICT를 활용한 생산성 강화 방안
- ECSG 향후 논의 방향 설정 및 의장단 선출

■ 조직 구성



〈참고 2 : e-Nego(전자적수출환어음매입) 해외 연계의 개요〉

■ e-Nego 시스템 해외 연계의 목표

- 국내 수출업자의 uTradeHub의 접속만으로도 수출환어음매입(Nego)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발행신청하여 국내 은행에 전자적으로 송부

*전자화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무방문·실시간 Nego 가능하므로 인적·물적 비용 절감
- 예상되는 수출업자의 대금회수기간 단축 : 1영업일

- 국내 은행은 무역문서를 전자적으로 해외 은행에 송부하여 수입업자의 신속한 물품 인수를 지원

■ 기존 전자무역문서 교환과의 차이 및 기대효과

	기존 전자무역문서교환	uTradeHub e-Nego 시스템
연계 방식	·B2B(특정 업체 시스템간 연계) ·업체별로 특정문서만 교환	·Hub(무역업체 및 유관기관, 은행, 물류업체 등이 uTradeHub에 일괄 연계)
현행 특징	·e-Nego 불가 ·국내수출업체가 전자적으로 발급 받은 서류를 수출대금 회수를 위해 종이 서류로 출력하여 오프라인으로 국내은행에 제출	·국내 e-Nego 가능 예정('08.4)
해외연계의 기대효과		·국내수출업체는 Nego 필요 서류(환어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수의자증명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원산지증명서, 수출신고필증정보)를 전자적으로 국내 은행에 제출 ·국내은행은 전세계은행망 넷워크인 SWIFT망을 통하여 전자무역서류를 해외은행에 송신함으로써 오프라인 송부 불필요